#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408

발의연월일: 2021. 4. 12.

발 의 자:주철현·권인숙·김원이

민형배 • 송재호 • 신정훈

양정숙・윤영덕・이규민

조오섭 의원(10인)

#### 제안이유

「헌법」 제121조가 경자유전과 소작제도 금지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가 꾸준히 증가해 전체 농지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고, 불가피한 경우에 최소한도로만 허용해야 하는 임차농지의 비율도 역시 절반에 육박하는 등 비정상이 횡행하면서 식량 공급과 국토 환경 보전을 위한 대표적 공공재인 농지가투기의 대상으로 전략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헌법상 경자유전의 대원칙을 지키고 농지에 대한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제한을 더욱 강화하고 차명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며 농지 소유자 등에 대한 정보를보다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음.

이에 투기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 소유를 금지하고, 상속으로 취득하거나 장기 영농 후 이농(離農)한 경우라도 자기의 영농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면적과 상관없이 처분 의무를 부과하고자 함.

또한, 차명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차명으로 등기할 경우에는 「민법」 제74 6조에 따라 그 소유권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농지 소유와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작성·관리하는 농지원부를 부동산등기부나 토지대장처럼 누구든지 열람하거나 등본 교부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공공재인 농지의 소유·경작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함.

#### 주요내용

- 가. 주말·체험영농을 위한 농지의 소유를 금지하고, 주말체험·영농은 임대나 무상사용만으로 가능하도록 함(안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7조 삭제, 제23조제1항제5호).
- 나.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나 장기 영농 후 이농(離農)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라도 자기 영농에 이용하지 않으면 그 면적에 상관없이 처분하도록 하되, 기존 1년의 처분 기한을 2년으로 함(안 제7조 삭제, 제10조).
- 다.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차명으로 등기한 농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여 농지를 차명 거래하는 행위 등을 원천 차단하되, 종중·종교단체 등이 차명 등기한 경우처럼 「부동산실명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함(안 제10조의2 신설).

라. 농지 소유와 이용 실태를 누구든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방자 치단체가 관리하는 농지원부를 부동산등기부나 토지대장처럼 누구 든지 열람 또는 등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지(제6호의 경우에는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를"을 "농지를"로 하 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다만,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遺贈)을 포함한다]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離農)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 기한을 2년 이내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명의신탁 농지소유권 반환에 대한 특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처분 대상 농지의 소유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한 농지 소유자는 명의수탁자에게 해당 농지의 소유권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같은 법 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제1항제5호 중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을 "농지를 주말·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한다.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시·구·읍·면의 장은 농지원부의 열람신청 또는 등본 교부신청을 받으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를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구·읍·면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로 한다.

① 누구든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제52조제1호 중 "제한이나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을 "제한을"로 한다.

제58조제1호 중 "제한이나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을 "제한을"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의 농지 소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농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제6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7조, 제 10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따른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 (생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 (현행
략)	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②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	
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주말·체험영농(농업인이 아	<u>&lt;</u> 삭 제>
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	
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	
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	
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	
다. 이하 같다)을 하려고 농	
지를 소유하는 경우	
4.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遺	<u>&lt;</u> 삭 제>
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	
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u>경우</u>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u>&lt;삭 제&gt;</u>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離農)한 후에도 이농 당	
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	
속 소유하는 경우	

6. ~ 10. (생 략)

③ • ④ (생 략)

제7조(농지 소유 상한) ① 상속으로 보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은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 ③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
- ④ 제23조제1항제7호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기간 동안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6. ~ 10.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 지 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① 농지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u>농지(제6호의 경우에는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를</u> 그 사유가 발생한 날당시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 <u><단서 신설></u>

- 1. ~ 3. (생략)
- 4.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자가 자연재해· 농지개량·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에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
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①
<u>농</u> 지를
<u>다만, 상속[상속인에게 한</u>
유증(遺贈)을 포함한다]으로 농
지를 취득하여 소유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
상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
농(離農)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
유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 기한
을 2년 이내로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u>&lt;</u> 삭 제>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 정한 경우

- 5. ~ 5의3. (생략)
- 6.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 | <삭 제> 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
- 7. · 8. (생략)
- ② (생략)

<신 설>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 대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 게 할 수 없다.

- 1. ~ 4. (생략)
- 5. 제6조제1항에 따라 소유하고

5. ~ 5의3. (현행과 같음)

7. · 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명의신탁 농지소유권 반환에 대한 특례) 「부동산 실 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 률」을 위반하여 처분 대상 농 지의 소유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한 농지 소유자는 명의수 탁자에게 해당 농지의 소유권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같은 법 제8조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차) ① -----

- 1. ~ 4. (현행과 같음)
- 5. -----

있는 <u>농</u>지를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 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또는 게 임대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하는 경우

-----농지를 주말·체험영농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 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 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6. (현행과 같음) <삭 제>

### 6. (생략)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 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 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 우

가.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 지 아니하는 사람이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소유 상 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이 제7조제2항 에서 규정한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8. • 9. (생략)

② (생략)

제50조(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 제본 등의 교부) <신 설>

① 시·구·읍·면의 장은 농지원 부의 열람신청 또는 등본 교부 신청을 받으면 농림축산식품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 원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등 본을 내주어야 한다.

② (생략)

제52조(포상금) 농림축산식품부장 제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고 발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8. • 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50조(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
본 등의 교부) ① 누구든지 시
구·읍·면의 장에게 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구·읍·면의 장은 농림축산식
품부령으로
·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52조(포상금)

- 1. 제6조에 따른 농지 소유 제한이나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
- 2. ~ 7. (생략)
-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 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6조에 따른 농지 소유 제 한이나 제7조에 따른 농지 소 유 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 명을 발급받은 자
  - 2. ~ 4. (생략)

1 <u>제</u>
<u>한을</u>
2. ~ 7. (현행과 같음)
제58조(벌칙)
<u>.</u>
· 1레
<u>한을</u>
2. ~ 4. (현행과 같음)